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7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위성곤·이기헌·정진욱

허성무 • 오세희 • 민형배

황정아 • 허 영 • 박홍배

이재관 • 이건태 • 전재수

박해철 · 주철현 · 황명선

김문수 · 이광희 · 채현일

민홍철 • 권향엽 • 서삼석

이재강 · 양부남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법률 제 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해녀"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 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해녀어업: 해녀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
- 2. 나잠어업: 해녀가 아닌 자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3.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u><신 설></u>	21. "해녀"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
	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말한
	<u>다.</u>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제40	제48조(신고어업) ①
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u>대통령령</u>	<u>다음 각</u>
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	<u>উ</u> 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한다.	<u>.</u>
<u><신 설></u>	1. 해녀어업: 해녀가 특별한 호
	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
	여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
	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
	유의 전통 어업
<u><신 설></u>	2. 나잠어업: 해녀가 아닌 자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u> 어업</u>
<u><신 설></u>	3.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